

	<h2 style="margin: 0;">전과규정</h2>	규정번호	3-4-11
		제정일자	2023.05.01.
		개정일자	2026.03.01.
		개정차수	12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의 목적은 학칙 제32조(전과)에 의한 교내 전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과: 현재 소속학과에서 타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.
2. 기타 전과: 학과개편, 학제개편, 전공배정에 의한 전과를 말한다.
  - 가. 전과(학과개편): 학과의 통합, 폐지, 변경신설 및 모집단위별 수강 최소인원 미달학과로 인한 전과를 말한다.
  - 나. 전과(학제개편): 학과의 수업연한변경으로 인한 전과를 말한다.
  - 다. 전과(전공배정): 학칙 제32조의2(자율전공학과 전공배정)에 의한 전과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6.03.01.]

제3조(전과 신청) ① 전과의 신청은 모든 학년에서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전과신청을 제한한다.

1. 입학(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) 첫 학기
  2.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를 이수한 자(단, 상위 학제로의 신청 및 유급신청자는 가능)
- ② 전과 신청자는 학기 시작 전 정해진 기간에 전출학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전과신청서를 제출한다.

제4조(전과 인원) ① 학과운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전과의 인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
② 학과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로 인해 신청자격 및 허용인원을 정해야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. <신설 2024.06.01.>

제5조(전과의 심사 및 허가) ① 전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전입학과에서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전과심사는 면접, 성적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전과 신청자가 제3조제2항의 허용인원을 초과 할 시 전과심사 결과의 점수순으로 선발한다.

제6조(전과 제한) 다음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.

1.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
2.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르는 다음 각목의 학과로의 전과
  - 가. 간호학과
  - 나.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
  - 다. 유아교육과
3. 계약학과,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

제7조(이수학점) ① 전과학생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, 이수학점의 인정은 전입학과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교양교과목: 전출학과에서 수강한 교양교과목은 전부 인정한다.
2. 전공교과목: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입학과의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융합교과목은 전부 인정한다.

3. 인접선택교과목: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교과목은 인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별 등록 및 총 이수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한다.

제8조(기타 전과) ① 전과(학과개편)는 학칙에 의하여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.

② 전과(학제개편)는 학칙에 의하여 소속 학과의 수업연한으로 변경한다.

③ 전과(전공배정)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6.03.01.>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0 년 8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전과신청에 대한 경과조치)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 전과부터 적용한다.